환경부

보 도 자 료

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보도 일시	2022. 2. 14.(월) 12:00 (화요일 조간)	배포 일시	2022. 2. 11.(금)
담당 부서	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	책임자	과 장 오흔진 (044-201-7270)
		담당자	사무관 김준호 (044-201-7271)

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

- 탄소중립 등 정책변화 반영, 평가서 구성과 작성 방법 개편 -

□ 환경부(장관 한정애)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'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(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)'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.

○ '평가서 작성 규정'은 '사업자 등*'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·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.

* 주요 개발계획 수립권자, 개발사업자, 평가대행업체 등

□ 이번 '평가서 작성 규정'은 평가준비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,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방법 전반에 걸쳐 대폭 개선했고, '사업자 등'에게 평가서 작성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 평가서가 체계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.

○ **(정책변화 반영)**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최근의 강화된 정책변화를 반영하고, 이상기후(폭염, 폭우, 가뭄 등)에 대한 현황조사,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을 반영하도록 했다.

○ **(평가준비서 구체화)** '사업자 등'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본격 작성하기 전에 미리 평가항목·범위·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화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.

- 이를 위해 평가준비서에 현황조사의 공간적·시간적 범위와 영향 예측·평가 방법 등 평가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비롯해 개발계획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했다.

○ **(전략환경영향평가서 구성체계 개편)**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정책계획*과 개발기본계획**으로 각각 분리하여,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, 평가서의 구성 체계도 현황조사와 평가,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으로 새롭게 정립했다.

*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

**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,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

○ **(환경영향평가서 구체화)** 환경영향평가서의 현황조사 시 신규 국가공간정보(연안침식관리구역, 시도 환경계획의 공간환경정보 등)의 활용을 강화하고, 대체서식지·습지 조성 시에는 이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등 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.

○ **(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방법 신설)** 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승인기관 및 환경부에 제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, 그간 조사계획의 수립 방법만을 제공했으나, 이번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방법도 새롭게 제공하여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과 협의내용 이행 상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.

□ 환경부는 새롭게 개편된 '평가서 작성 규정'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과 함께 해설서(가이드라인)도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다.

○ 해설서는 2월 말 이후 환경부 누리집(www.me.go.kr)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.

○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“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의 시행으로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면서, “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고 사업자등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서 작성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1. 평가서 작성 규정 주요 변경 내용.
2. 전문용어 설명. 끝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1 | 평가서 작성 규정 주요 변경내용

[개정배경] 탄소중립 등 신규 환경정책 반영, 그간 단편적으로 개정되어온 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선

1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(별표 4, 별표 6)

○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**탄소중립 등 신규 환경정책** 반영, **이상기후**(폭염, 폭우, 가뭄 등)에 대한 **현황조사,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** 추가

○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위해인자 노출에 **민감한 계층**(어린이, 노약자, 장애인 등)**에 대한 현황조사,** 생태면적률 확보 및 녹지·공원·수환경 등과 연계한 녹지축 구축 등 **토지이용계획의 생태적 건전성 강화**

2 평가준비서 단계부터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및 대안 평가 체계 강화

(제7조의2 신설, 별표 3, 별표 5)

○ **평가 분야 또는 항목별**로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에서 설정된 주요 목표 및 지표, 생태면적률, 환경생태계획 등 **다양한 환경보전목표 수립** 신설

○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환경보전목표 달성을 위한 입지, 수단·방법 등의 **대안 설정 및 각 대안별 시나리오 설정·분석 방법 등 구체화**

○ 현황조사의 공간적·시간적 범위, 영향 예측·평가 방법 등의 **평가준비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평가협의회 심의 내실화**

<개선 전·후 비교표>

개 선 전	개 선 후
<신 설>	○ 환경보전목표의 설정
○ 평가대상지역 설정	○ 평가대상지역 설정
○ 지역개황	○ 지역개황
○ 대안 설정	○ 대안 설정(대안별 시나리오 구성안)
○ 평가항목·범위등의 설정(평가항목)	○ 평가항목·범위등의 설정(평가항목, 현황조사 항목·범위, 모델링 등 분석방법)
○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	○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

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 방법 체계화(별표 4)

○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의 **전략평가서 작성방법을 분리**하고, **현황조사·평가·보전대책 등 평가서의 구성 체계를 확립**

<개선 전·후 비교표>

개 선 전

전략평가서 작성 방법

평가 항목별	해당 항목에 대한 영향여부 제시 등

※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 미구분

※ 평가항목별 구성·작성 체계 미비

개 선 후

전략평가서(정책계획) 작성 방법

평가 항목별	**현황조사** (관련 상·하위 행정계획) → **환경평가** (계획의 적정성 등) → **환경보전대책**

전략평가서(개발기본계획) 작성 방법

평가 항목별	**현황조사** (국가 DB 활용한 환경 현황) → **환경보전목표** (생태면적률, 오염총량 등) → **환경평가** (입지의 타당성 등) → **환경보전대책**

4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구체화(별표 6)

○ **평가대상지역 설정, 각 평가항목별** 조사내용 및 범위, 평가결과 및 환경보전대책 등에 대한 **평가서 작성 방법 구체화**

※ 현황조사 시 신규 공간정보(연안침식관리구역, 시·도 환경계획의 공간환경정보 등)를 반영하고, 대체서식지·습지 조성 시에는 유지관리 대책수립 등의 환경영향 저감대책 강화 등

5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환류 강화(별표 9의2 신설)

○ 사후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조치, 협의내용 이행·관리 상황 등에 대한 **사후조사 결과통보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**

붙임 2 전문용어 설명

□ **(전략환경영향평가)**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·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

<평가절차도>

평가협의회 구성·운영 (행정기관의 장)	·평가 준비서 작성 ·평가항목·범위등 결정
↓	
평가서 초안 작성 (행정기관의 장)	·초안 공고·공람
↓	
주민 등 의견수렴 (행정기관의 장)	·설명회 및 공청회
↓	
전략평가서 작성·협의 (행정기관의 장 ↔ 환경부장관)	·KEI 등 검토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

□ **(환경영향평가)**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등의 승인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·예측·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

<평가절차도>

평가협의회 구성·운영 (승인기관의 장)	·평가 준비서 작성 ·평가항목·범위등 결정
↓	
평가서 초안 작성 (사업자)	·공고·공람(관할 지자체)
↓	
주민 등 의견수렴 (사업자)	·설명회 및 공청회
↓	
환경영향평가서 작성·협의 (사업자 평가서 작성 → 승인기관의 장 ↔ 환경부장관)	·KEI 등 검토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
↓	
사후환경영향조사 (사업자)	·협의내용 이행여부 및 사후 모니터링

□ **(소규모 환경영향평가)**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미만으로서,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·예측·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 마련

<평가절차도>

환경영향평가서 작성·협의 (사업자 평가서 작성 → 승인기관의 장 ↔ 환경부장관)	·KEI 등 검토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

□ **(생태면적률)** 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

□ **(환경계획 공간환경정보)**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라 시·도 또는 시·군이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물, 대기,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